사 설

착한 선 결제, 기대 크다

"캠페인 성공 위해 10% 캐시백 지급
월 충전한도 100만원까지…직원 5,000명 참여"

전주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착한 선 결제 운동'이란 시책을 내놨다.

전주형 착한 선 결제 캠페인은 10만~30만원을 미리 결제하고 나중에 쓰는 착한 소비운동이다. 참여자가 늘고 이 캠페인이 확산되면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 결제 캠페인은 오는 3월까지 70여 일 동안 기간을 정해 추진하는데 집이나 회사 근처 음식점에서의 선 결제, 예술 공연 티켓 선구매, 화훼업소 꽃바구니 비용 선결제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전주시는 이 캠페인 성공을 위해 10%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전주사랑상품권 혜택을 예산 범위 내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월 충전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혜택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충전한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3월 31일 이후에는 10% 추가 인센티브가 소멸된다. 이 캠페인에는 당장 전주시와 전주시설관리공단,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시 출연기관, 산하단체 임직원 5,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오는 27일부터는 민간 중심의 2단계 선 결제 운동으로 대기업, 금융기관,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과 라이온스, 로터리, 동 자생단체 회원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이 대거 참여한다고 전주시는 밝히고 있다.

5만 명의 시민이 전주사랑상품권을 두 달 동안 100만원씩 충전해 선 결제를 하면 1,000억원이 시중에 돌게 될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생각만해도 훈훈하고, 신이 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착한 임대운동과 착한소비운동, 해고없는도시 등에 이은 전주시의 시책에 박수를 보낸다.

이 캠페인에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급여생활자들의 참여가 우선돼야 한다. 한정적인 예산지원만으로 시민 다수의 참여를 유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만 활성화될 것이라는 안타까움도 크다.

미관 훼손하는 전봇대 사라져야

"전북 전봇대 35만개, 지중화 탄력받나
국회, 도시재생사업지 전기시설 지중화 촉진"

지자체 부담을 크게 줄여 전기기설 지중화를 촉진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추진하는 전기시설 지중화 공사는 그 사업비 50%를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도로 점용료는 면제하도록 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정재 의원에게 지난해 제출한 '전국 전주 통계 및 배전선 지중화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전주 433만2,681개 중 대구·경북이 68만8,011개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광주·전남에 58만4,115개, 대전·세종·충남에 48만9, 562개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전주가 적은 도시는 제주 8만7,322개, 서울 13만6,330개, 인천 16만5,212개 순으로 지역 간 설치된 전주의 개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북지역은 35만491개가 세워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이유로 전선을 땅에 묻는 것을 전선지중화라고 하는데 한전 자료에 따르면 경북은 배전선 지중화율이 6.89%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배전선 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59.75%이며 그 뒤를 대전 55.25%, 부산 41.23%, 인천 40.63%, 세종 37.91% 순으로 이었다. 전국 평균은 18.8%, 이 가운데 전북은 그 절반 수준인 10.7%에 그쳤다.

현재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지는 전주 중앙동과 서학동, 군산 금암동과 해신동, 익산 송학동과 남중동, 정읍 수성동과 연지동, 남원 금동과 동충동, 김제 요촌동과 신풍동, 완주 봉동읍과 상관면 등 모두 37곳에 달한다.

전주가 많을수록 공중에 거미줄처럼 엉킨 전선이 보기 좋지 않고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 관련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쇠퇴하는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주거환경도 개선하자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를 살리려면 전기시설 지중화 사업비 절반은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옳다는 시작이 많다. 이것이 바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그리고 전기사업자가 서로 상생하는 길이 될 것이 아닌가.

자연재해로 인한 전선 고장 방지와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배전선 지중화율을 높여야 한다. 특히 지역간 차이가 큰 전주개수와 지중화율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법 Q&A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 처리 혜택은?

허 기 봉 공인노무사

Q: 재석 씨는 학비를 마련하고자 방학 중에 퀵서비스 배달업무를 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심하였으나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업무가 대폭 늘어나 자신도 모르게 과속을 하게 되었지요. 재석 씨는 산업재해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산재 처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먼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발전 등으로 노동자와 노동자가 아닌 자(독립사업자, 자영업자)사여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분들을 보통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합니다.

종사 직종에 따라 근로 형태가 아주 다양하지만, 근로시간·장소의 선택이 일반 노동자에 비해 자유롭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재량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자들과는 구별되지만,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지속해서 특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등 완전한 자영업자도 아닌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퀵서비스 배달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퀵서비스 배달원 등의 수요가 더 많아졌고, 그만큼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럼 재석 씨는 산재 처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은 1964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2018년 7월부터 상시 1인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 트럭 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이 적용되었고, 이후에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가, 2019년 1월 1일에는 콘크리트믹서 트럭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전체 건설기계 조종사(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27개)로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고, 2020년 7월 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 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이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당연 적용 대상
별도 가입서식으로 일반근로자와 부과방식 달라"

이처럼, 시대의 요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당연 적용 대상이 되어 있으므로, 종사자 본인이 적용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출퇴근 재해 포함)를 입었을 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방식이나 보험료 부과 방식 등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일반근로자와는 다릅니다. 일반근로자는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4대 보험 공통서식인 취득 및 상실 신고서를 제출하고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별도 서식으로 입직신고와 이직신고를 하고 산재보험료도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즉,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의 보수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부과하게 되고 급여도 이를 기준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산재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나 방식 등에 있어서는 일반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청 절차와 승인기준도 동일하고,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 각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된 보험급여도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는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논의가 일기 시작됐다. 그 뒤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이후 1998년 경찰청 내에 경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경찰제도기획단을 운영했다.

외국의 제도를 연구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자치경찰 제도에 관한 연구를 본격화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주민 생활 중심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경찰 창설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2006년 7월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과 이관한 제주자치경찰제도가 실시됐다. 그러나 제주자치경찰은 수사권이 없어 '무늬만 경찰'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자치경찰제 찬성측은 지방자치제도 취지에 맞게 경찰 서비스도 중앙의 국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분권화된 운영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역 치안에 대한 지역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범죄의 예방이나 교통 정책은 결코 경찰의 힘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반대측은 인건비 등 예산 부담을 자치단체에 지운다는 점을 내세운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의 경찰 사무와 인사권 배분 문제, 의회의 통제에 대한 입장이 다른 데서 오는 정치적 갈등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재정 능력이 차이가 나는 자치단체 간 불균형도 문제다. 치안 수요에 대한 공급 수준의 차이로 주민의 불만이 커질 수도 있다.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업무 범위는 현재 제주자치경찰의 2~3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시·도 소속 공무원인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다. 자치경찰본부장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한 3배수 후보자 중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고 한번 연임이 가능하다. 시·군·구 자치경찰대장은 시·군·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국가-자치경찰 간 인사교류가 가능하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정당 소속이 아닌 지역주민, 시민사회 인사, 치안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인물 등으로 구성한다. 자치경찰제 실시를 앞두고 벌써부터 의견이 분분하다. 무엇보다 먼저 찬반 의견을 통해 국민 여론을 여과 없이 수렴해야 할 것이다.

/정복규(객원 논설위원)